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06. 9. 7(목)[1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의회 사무국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운 영 위원회	[위원장] 이 매 숙 [간 사] 이 성 희 [위 원] 강 성 국, 김 정 일 박 영 길, 정 해 원 최 형 규	마포구의회 사 무 국	운 영 위원회실	김건재	황향선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감 사 방 법	비 고
2006. 9. 7(목)	마포구의회 사 무 국	운 영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05,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
- 마포구 종합행정타운내 구의회 건물 건립
- 국내여비 집행실태
- 의회도서관 정비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구의회도서관을 보면 소장된 도서가 부족하고 조명시설도 미흡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회관련 서적 및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실내 환경을 정비하여 구민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마포구 종합행정타운내 건립예정인 구의회 건물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바,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처리의견

-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6년 10월 23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자치입법 활동과 2007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6. 9. 5 (화) ~ 2006. 9. 11 (월) [7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 동사무소 (도화2동, 서교동)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행정건설 위 원 회	[위원장] 박지위 [간 사] 강원돈 [위 원]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마포구시설 관리공단	행정건설 위원회실 및 동사무소	박관수	은진아

나.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일자	감사대상 부서	감사장소	감사 방법	비 고
2006.9.5 (화)	도 화 2 동 서 교 동	해 당 동사무소	증 인 선 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2006.9.6 (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 총 무 과 - 주민자치과 - 문화체육과 - 민원봉사과 - 여 권 과 - 재난안전관리과	행정건설 위원회실	증 인 선 서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응답	
2006.9.7 (목)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 재 무 과 - 세 무 1과 - 세 무 2과	행정건설 위원회실	증 인 선 서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응답	
2006.9.8 (금)	건설교통국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토 목 과 - 치 수 과	행정건설 위원회실	증 인 선 서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응답	
2006.9.11 (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건설 위원회실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5. 행정사무감사 실시내용

부 세 별		부 수 감 사 실 시 내 용
감 사 당 당 관		☐ 공직기강 확립방안 ☐ 진정민원 처리현황 ☐ 쿨린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 명예감사관 운영현황
행 정 관 리 국	총 무 과	☐ 승진인사 현황 ☐ 인사교류 방안 ☐ 종합행정타운 건립 추진현황
	주 민 자 치 과	☐ 새주소사업 추진현황 ☐ 동청사 신축건립 추진현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문 화 체 육 과	☐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현황 ☐ 내고장마포 발간 및 배포현황 ☐ 신문구독 현황 ☐ 관광안내지도 제작현황
	여 권 과	☐ 없음
	재난안전 관 리 과	☐ 재난위험건축물 관리현황
기 획 재 정 국	기 획 예 산 과	☐ 조직개편 추진현황 ☐ 행정소송 추진현황 ☐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현황 ☐ 각종 인센티브 사용현황
	재 무 과	☐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 각종 불용예산 현황
	세 무 1 과	☐ 재산세 부과현황
	세 무 2 과	☐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현황
건 설 교 통 국	교 통 행 정 과	☐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 ☐ 그린파킹 추진현황 ☐ 공영주차장 개설현황
	교 통 지 도 과	☐ 영리공영주차장 운영현황 ☐ 불법주차 단속현황 ☐ 마을버스 위반 단속현황
	토 목 과	☐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 도로포장공사 현황 ☐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치 수 과	☐ 빗물받이 및 역지변 설치현황 ☐ 수해침수 및 복구현황 ☐ 하수관 준설현황
도 화 2 동 서 교 동		☐ 사회복지 업무 추진현황 ☐ 마을문고 운영현황 ☐ 직능단체 운영현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마 포 구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우선 주차제 운영현황 ☐ 마포문화센터 운영현황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감사담당관

- 주민의 진정민원을 동사무소에서 접수하여 공문으로 구청 해당부서로 발송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정민원해소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재해대비 비상근무는 주민의 재산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동사무소의 비상근무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공직자 기강이 해이하니 감사담당관에서 직원 근무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행정관리국

■ 총무과

-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직·기능직 승진이 늦으니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에게 건의하여 6급 pool제 운영으로 기술직도 구청자체에서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 집행부 감시기능도 있으니 인사위원회에 구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1~2명정도 추가시켜주는 방안을 검토바람.
- 동사무소 직원의 진급이 늦으니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주민자치과

- 우수자치센터 시상이 있는데 심사수당이 시상금보다 많아서는 안되니 시정하기 바람.
- 유사 사회단체들을 통폐합하여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하는 등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바람.
-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친목회 식으로 식대등으로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실사평가하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문화체육과

- 소년소녀합창단의 회비사용 내역이나 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산내역을 공개하여 학부모에게 반드시 보고해주기 바람.
- 내고장마포 제작 비용에 비해 배포율이 저조하여 주민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배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 2005년도 소송현황이 83건에 15,037백만원이라고 하는데, 매년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소송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재무과

- 예산집행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운용하여 불용예산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건설교통국

■ 교통행정과

- 망원동에서 합정동을 경유하여 영등포 방향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없으니 이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기 바람.
- 그린파킹 사업은 주차문제가 심각한 단독주택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홍보강화나 인센티브 강화등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시행하기 바람.
- 성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입구에서 경성고등학교까지 횡스설치 요청이 있었는데 공사 시행할 때 과속방지시설과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람.
- 무단방치차량 직권폐차된 이후에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어 나오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교통지도과

- 염리공영주차장 요금이 과다책정 되었으니 50% 정도 대폭 삭감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염리동, 도화동 지역의 주차단속되는 차량의 견인보관소로 염리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온누리 운수는 경고가 15번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등 행정처분에 형평성이 어긋나니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적의 조치하기 바람.
- 마포문화센터 옆 염리동 길에 거주자우선 주차면이 있다가 주민 반대로 없어 졌는데, 이곳에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니 주민안전을 위해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주기바람.
- 마을버스가 영업시간 이후에 차고지에 주차되어야 하나, 차도 등에 주차된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람.

▣ 토 목 과

- 도로 포장공사시 콘크리트 보다는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이 깨끗하고 주민이 편하니 2007년 부터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망원동 497-85, 86번지 사유지를 공도로 사용하다가 본인 땅임을 나중에 알게된 주민이 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 서강대교 아래에 차고지가 있는 운수업체가 임시주차를 하고, 변상금 부과도 없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람.
- 서강초등학교 앞 육교밑에 매설된 도시가스 정압기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전하여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으니 도시가스측과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하여 주기 바람.

▣ 치수과

- 망원동 유수지 체육공원 앞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것은 공원 미관상 좋지 않고, 문화체육과 요청으로 유수지 펌프장 유지관리 수선비를 사용하여 설치한 것은 옳지 않으니 재제작 계획을 재고하고 컨테이너박스는 사람 왕래가 적은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하기 바람.

- 망원동 유수지 체육공원안의 조명시설이 미약하니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천막 등)을 정비·보완하여 주기 바람.
- 낙찰차액을 방침을 받아 하수도 준설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이러한 예산전용은 지양하기 바람.

동사무소

■ 도화2동

- 도화 1,2동과 마포동을 통합하고, 길 건너편을 용강동으로 편입하는 행정구역개편 방안을 구청에 보고하기 바람.

■ 서교동

- 마을문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정서 함양 및 마을문고 활성화에 안전을 기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기 바람.
- 거주자우선 주차면에 낮에 불법주차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가진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마포문화센터 독서실 이용객이 도시락등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마포문화센터 체육동 산소발생기를 설치한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주기 바람.
- 마포문화센터 대공연장을 민방위교육장으로 수년간 무료대여해주고 있는데, 수익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람.
- 마포문화센터를 찾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을 주말에도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마포문화센터 목련홀(웨딩홀)을 문화센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 재정 수입도 증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나. 건의사항

- 각 동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과중하니 업무분담을 하여 복지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기바람.
- 동사무소에서 국기 게양 홍보를 강화하여 국경일 태극기 게양을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표창을 적극 상신하여 직원 사기를 높여주기 바람
- 승용차요일제 동별 실적에서 순위를 낼 때 전자태그 배부율로 하지말고 전자태그 배부건수로 동별실적을 내어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를 높여 주기 바람.
- 부패의 원인은 업무처리 절차의 까다로움과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니 장기처리 민원에 대한 기간단축과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명예감사관 위촉할 때 토목, 건축등 기술전문가 외에도 집단민원 발생시 초동단계에서 처리할 전문 민원상담자도 위촉하기 바람.
- 일상감사할 때 관급공사의 경우 부실건축이 많으니 토목, 건축분야의 감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2006년도 관광안내도는 외국인이 봐서도 마포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안내도가 되도록 잘 제작하기 바람.
- 홍보비가 정책적으로 과다지출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집행하기 바람.
- 상암동 MBC 방송국 유치를 위하여 민간단체에서 주민들이 추진단을 구성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바, 구청장도 함께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마을버스 노선 증선이나 변경이 법적규제로 어려우니 조례개정등을 통하여 가능한 방안을 검토바람.
-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므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토목과, 치수과등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구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공사추진시 해당 구의원에게 신속한 안내와 설명을 해주기 바람.
- 하수관 악취가 심한 지역은 특수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하여 주기 바람.
- 망원동에서 연남동까지의 구간에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 지역은 영세상인이 많으니 주차 단속을 완화해 주기 바람.
-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인허가 담당직원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불필요한 관련업소 출입을 자제하도록 특별히 관리하기 바람.

다. 처리의견

-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6년 10월 23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이며, 건의사항은 새로운 정책입안 및 시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북지도시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06. 9. 5(화) ~ 9. 11(월) [7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 동사무소 (연남동)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북지도시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갑 [간 사] 영 운 주 [위 원] 강 성 국, 김 정 일 박 영 길, 윤 동 현 정 해 원, 채 재 선 홍 은 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 건 소 연 남 동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북지도시 위원회실 •동사무소 •마포구시설 관리공단	김건재	황향선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감사방법	비 고
2006. 9. 5 (화)	연 남 동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연남동사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2006. 9. 6 (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복지도시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2006. 9. 7 (목)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복지도시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2006. 9. 8 (금)	주 택 과 도시관리과 건 축 과 지 적 과 공원녹지과	복지도시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2006. 9. 11 (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 약 과	복지도시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구 청 >

부 서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생 활 보 조 사 회 복 지 과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실적현황 ○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교부액 ○ 어르신공동작업장 운영내역 ○ 동별 노인정 운영 현황 및 신설 계획안 ○ 장애인 단체별 현황 및 지원내역 ○ 동별 독거노인, 틈새계층,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태 ○ 결식노인 지원 및 경로식당 운영현황 ○ 생업자금융자 현황 ○ 구립경로당 현황 및 유지관리비, 개보수 내역 ○ 장애인 보장구 구입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역 ○ 관내 노인 취업 및 복지프로그램 시행내용과 향후계획 ○ 관내 장애인 취업 및 복지프로그램 시행내용과 향후계획 ○ 저소득주인 긴급구호사업 시행내역
국 가 보 조 지 정 복 지 과	○ 어린이집 예산지원내역과 구립어린이집 건립내역 ○ 여성직업훈련 및 예산지원내역 ○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사업별)지원내역 ○ 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 ○ 청소년 관련 시설별 현황 및 지원금 내역 ○ 청소년 관련 행사실시 현황 ○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적 및 위탁업체 현황 ○ 동별 보육시설 명단 및 지원현황 ○ 동별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실태 ○ 초등학교 예·체능종합발표회 예산, 집행현황 및 개선책

부 서 별		주 요 감 사 실 사 내 용
생 활 복 지 국	지 역 경제과	○ 구인·구직자 취업실적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 마포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구체적 사례 명기 ○ 담배사업법17조3항에 의한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현황 ○ 마포희망시장(재활용시장) 현황 ○ LPG 가스 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 ○ 유기동물 포획실적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 동별 공공근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 소 환경과	○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 ○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내역 ○ 난지도 골프장 준공이후 현재까지 농약사용 내역 ○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장려금, 보상금 지급내역 ○ 정화조청소 업체별 수거실적 및 불량정화조 적발내역 ○ 망원1동소재 재활용센터의 지원현황 및 건물허가 여부 ○ 정화조 및 청소환경업체 주민 민원접수 상황 ○ 정화조 및 청소환경업체 과태료 부과 현황 ○ 정화조업체 수거량 및 수수료 현황 ○ 청소환경업체별 청소 구역 ○ 청소환경업체 지정후 청소구역 변경사항 ○ 업체별 환경미화원 인원수 및 1인당 청소구역 ○ 청소환경업체 쓰레기봉투 판매량 ○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지정 변동 사항 및 제작업체 현황 ○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감시카메라 판독 단속실적 ○ 대기오염(비산먼지 등) 배출 단속내역 및 대책안 ○ 음식물쓰레기 수거체제 및 수거량과 처리현황 및 소요예산 ○ 버스(마을버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내역

부 서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도 시 관 리 국	주택과	○ 관내 5평이상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 동별 옥탑 불법건축물 현황 ○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공공시설등)결정에 따른 보상내역 ○ 관내 낙후된 APT에 대한 점검현황
	도시관리과	○ 가로적치물, 노상적치물, 방치물에 대한 정비 및 단속현황과 향후 정비계획 ○ 가로환경정비 대상물 정비대상 및 정비실적 내역 ○ 무허가 음식점소(노점, 포장마차등) 지도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과 앞으로 문제점 대책 안 ○ 포장마차등 도로 무단점유 노점상단속용역업체 실적현황 ○ 불법노점,노상적치물,보도상 영업 시설물, 불법유동 광고물,전단지등 지도단속 현황 문제점 대책 안
	건축과	○ 마포건축상 수상작 ○ 동별 옥탑 증축허가 현황
	지적과	○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내역
	공원녹지과	○ 어린이공원별 시설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 ○ 망원동소재 공원녹지과 창고의 설치근거와 건물 허가 여부 ○ 헬스형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 ○ 관내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

부 서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보 건 소	보 건 위생과	○ 학교급식시설 위생점검 및 결과 시정조치현황 ○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 ○ 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 대중 목욕업 내 식당, 위생에 관계되는 행정처분 실적 및 현황 ○ 변태, 퇴폐영업 노래방, 주점 지도단속 행정처분 실적 ○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선정 규정과 명단, 실적 내역 ○ 마포구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자판기현황
	지 역 보건과	○ 학교대상 건강관리 사업별 현황 및 실적 ○ 동별 소득현황 등 관리내역(약품명 포함) ○ 기존 연약소득의 유해성에 대한 주민홍보 방법 및 횟수 ○ 전격살충기에 대한 살충효과 분석에 대하여 - 곤충종류 - 사람에 대한 유해·무해 곤충별 비율 및 곤충명 - 전격살충기 동별 설치장소 ○ 관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지원내역 ○ 취약지역 방역대책 ○ 학교결핵검진 실적 및 감염실태
	의약과	○ 건강증진실의 활성화 방안

< 동사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부 서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연 남 동	○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 독거노인 관리실태 ○ 생활폐기물 수거 실태 ○ 재활용품분리수거 실태 ○ 소년소녀가장 방문 관리실태 ○ 장애인등록 및 관리실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조사 추진실태 ○ 종량제규격봉투 관리실태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접수 관리실태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지도단속 ○ 공공근로사업 운영실태 ○ 노인교통수당 지급관리 ○ 경로연금대상자 조사 및 지급 ○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확인
마 포 구 시설관리공단	○ 수산물 매장의 수질검사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 수산물 매장의 배수시설 ○ 임대매장의 무상임대 현황 ○ 자금관리 예치현황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생활복지국

■ 사회복지과

- 어르신 공동작업장은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시설임. 영리동 소재 어르신나눔터와 같은 공동작업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신교경로당의 경우 종전 장소가 새로 이전한 장소보다 좋다는 의견이 많은 바, 향후 경로당 이전시 건물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노인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서울시 9개구에서 푸드마켓이 시행되고 있으나, 마포구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 경로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 가정복지과

- 망원청소년 독서실이 문화기능 위주로 확대 운영되어 주변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독서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니, 독서실 기능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홍보를 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각종 행사시 언론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람.

- 학교환경개선 사업비중 도서실 리모델링, 컴퓨터실 설치 등은 교육청 예산으로도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집행시 반드시 교육청의 예산을 확인한 후 집행하고, 자치구 예산을 절약하여 문화적 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 질높은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의 교재교구비 지원예산중 일부를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결과를 보면, 이 지역에 연고가 없거나 2개 이상을 운영하는 업체등이 있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니, 어린이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라도 운영체 선정시 심사요건을 강화하여 선정하기 바람.
- 여성직업전문 교육과정이 좀더 생산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기 바람.
- 마포구 여성단체연합회가 특정인의 정치 세력화가 되지 않고 순수성을 지닌 단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람.

■ 지역경제과

-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하여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상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도 보호하고 판매인의 권익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 한해서 경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일용근로자의 구직이 어려워지고 있어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 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니, 향후 예산편성시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 마포희망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구인구직 취업실적에만 치중하지 말고 취업후 직장 적응실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향후 효율적인 구인·구직안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유기동물 신고시 유기동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시 포획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하기 바람.

■ 청소환경과

-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방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오히려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예산이 증가하는 실정에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 하는 사례가 많으니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관리국

■ 도시관리과

- 대리운전 광고지 또는 영업장 선전물 등 불법유동광고물 증가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하기 바람.
-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인 자립형사립고가 아현뉴타운지구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 바람.

■ 공원녹지과

- 일부 어린이 공원의 모래판 배수가 불량하고 강아지등의 배설물로 질병 감염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어린이 공원에 일부 비행 청소년들이 모여 있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지 못하고 있으니,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위탁 관리하는 경로당과 협조하여 순찰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 경찰서지구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기 바람.
- 망원동 테니스장은 회원제로 위탁관리 되고 있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구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성미산 약수터가 오염되어 식용불가로 판정받았음에도 계속 약수터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니, 구민건강을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 마포구의 상징인 청둥오리를 관찰할 수 있도록 서식지에 망원경, 전망대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가로정비 용역업체 직원들이 가로정비 단속시 몸에 새긴 문신이 들어나게 하여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위압감을 주고 있으니 시정하기 바람.
- 상암산의 체육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SH공사측과 협의하여 정비하여 주기 바람.

보 건 소

■ 보건위생과

- 관내 일부 자판기 내부에 먼지등이 쌓여 있어 위생상태가 좋지 않으니 차후 점검시 외부만 점검하지 말고 내부도 점검하여 청결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지역보건과

- 마포구 거주 에이즈 감염자는 2004년 48명, 2005년 62명, 2006년 8월 현재 75명으로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실정에 있는바,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감염자에 대한 관리 철저로 에이즈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방역은 일몰 30분이후나 이른 새벽 시간대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니 효율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효과가 좋은 전격 살충기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검사나 교육은 해당학교의 보건교사와 협의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학교 학생에 대한 금연교육 실시후 일단 담배를 끊은 학생이 재발 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경로당 이동진료시 사전에 의료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서 이동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일부 경로당의 경우 이동진료가 있는 것도 모르는 곳이 있으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의약과

- 건강증진실이 활성화 되어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운동처방사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처리하고 있고,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동사무소

■ 연남동

- 동사무소에서 거리 청소용으로 지원되는 규격봉투를 공공용 쓰레기 수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불법 적치된 쓰레기 수거 및 중간 집하장 운반처리 실적이 84회, 75톤으로 무단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구청에 건의하여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무단투기 단속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독거노인 모닝콜 확인대장에 전화불통으로만 되어있어 결과에 대한 조치를 알 수 없는 바, 전화불통자의 가정을 방문하였으면 별도로 표시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농수산물시장내 수산물 매장의 수질검사를 1년에 3번만 하지 말고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수질 검사를 자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 및 환경문제에도 신경을 써 주기 바람.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니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여 국민들이 농수산물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수산물센터내에 배수가 잘 되지 않아 겨울철에는 빙판이 되어 안전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시정 조치하고, 호객행위 금지 및 청결성
유지로 소비자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람.

나. 처리의견

-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6년 10월 23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